

공동기기센터 관리운영 내규

[연구장비 공동활용]



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공동기기센터 관리운영 내규 (연구장비 공동활용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공동기기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센터의 연구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연구장비”란 연구개발,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장비를 말한다.
2. “공동활용”이란 연구자가 장비보유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전담운영인력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장비관리기관”이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항공대학교 공동기기센터를 말한다.
4. “장비운영기관”이란 공용활용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유지관리 및 공동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항공대학교내의 기관을 말한다.
5. “시설장비책임관”이란 기관 내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6. “이용자”란 장비관리기관에 한국항공대학교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.
7. “장비운영지원금”이란 장비이용료수입 중 장비관리기관운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
제4조(역할) ① 장비관리기관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공동활용 연구장비 실태조사 총괄 관리
2. 장비이용료 산정 및 수입의 운영·관리·배분
3. 공동활용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 및 성과 총괄 관리
4. 기타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

② 장비운영기관은 해당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장비 상태 유지 및 관리
2. 연구장비 등록 및 처분 등 관리사항 보고

3. 연구장비 운영일지 기록 및 이용실적, 활용성과 관리
4. 연구장비 이용시간, 재료비 등 장비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관리
5. 장비운영지원금의 목적에 적합한 운영·관리
6. 연구장비 이용시간 배정, 이용법 등의 교육
7. 전담운영인력 확보 및 연구장비 분석·이용 관리 지원

제4조의2(시설장비책임관) ① 시설장비책임관은 공동기기센터장이 한다.

② 시설장비책임관은 연구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
2. 연구시설·장비종합정보시스템(ZEUS :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)의 연구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
3. 저활용·유휴·불용 연구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 감독
4. 보유 연구장비에 대한 실태조사
5. 보유 연구장비의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
6. 공동활용 연구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 지출 관리 등의 점검
7. 기관 내 연구장비의 담당자 필수 교육 이수 점검
8. 기타 보유 연구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(이용자의 의무)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장비운영기관에서 정한 각종 규칙을 성실히 준수
2.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종료 후 장비운영기관장에게 당해 연구장비의 이상 유무 회신
3.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장비운영기관장에게 알림
4.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,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
5.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, 연구보고서,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사실을 명기하고, 그 결과를 장비운영기관에 통보

제6조(운영세칙) 기타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